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김종무 의원 대표발의)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40호
- 나. 제 안 자 : 김종무 의원(찬성의원 14명)
- 다. 제안일자 : 2019년 01월 28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01월 31일

## 2. 제안이유

- 지하철역 개통, 재개발·재건축 단지 입주 등 교통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을버스 노선연장·변경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.
-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버스 운영이 가능해져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철도 및 일반노선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자가용 이용 억제 및 교통체증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됨.

## 3. 주요내용

- 구청장에게 위임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중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(안 별표)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조례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중 ‘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’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,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버스 운영과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##### 나.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사무의 위임 조정(안 별표)

- 개정안은 ‘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사무’ 중에서 그 동안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제외되었던, ‘마을버스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 사무’(제1호)와 ‘마을버스 노선 연장·변경에 관한 사업개선 명령 사무’(제5호)를 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하려는 것임.

<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임범위 조정 >

현행				개정안			
주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	주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버스정책과	1.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(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	(생략)	구청장	버스정책과	1.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구청장

현행				개정안			
주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	주관부서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버스 정책과	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)  <신설>  가.~라. (생략)	(생략)	구청장	버스 정책과	가.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  나.~마. (현행 기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)	(현행과 같음)	구청장
	2.~4. (생략)				2.~4. (현행과 같음)		
	5.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(마을버스 노선 연장·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)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6.~16. (생략)	(생략)	구청장		5.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으로 인한 손실보상 에 관한 사무  6.~16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구청장

- 이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포함해 마을버스 운영체계 전반을 자치구로 위임함으로써 지역교통 상황과 교통수요 변화에 맞춰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.
- 그 동안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 불편 지역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, 대중교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음.
- 이에 일부 자치구는 ‘구청장협의회’를 통해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의 사무 위임을 요구해 왔으며, 특히, 지하철 개통 등으로 신규 교통수요에

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자치구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을 조속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.

- 마을버스 교통수요에 대한 시민대응적·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자치구에 권한이 위임되어야 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됨.
- 다만 과거사례를 보면,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에 권한 위임한 후(1991년 6월), 지역 민원, 영업이익 등에 따른 잦은 노선 변경과 무분별한 노선구축 등으로 오히려 시민불편이 야기되어 위임 권한을 환수(2000년 5월) 한 바 있음.
- 서울시는 지역별·권역별 교통여건에 맞춰 지하철, 시내버스, 마을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,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한 등을 자치구로 위임 할 경우 자칫 운송수단간·자치구간·업체 간 전반적인 조율과 체계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임. <참고자료 1>
- 결론적으로,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의 위임 문제는 기존 사무위임 전례와 예상되는 우려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지역교통 수요에 기반한 신속하고 탄력 있는 민원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·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임.

- 한편, 서울시는 마을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(재정보전·인센티브·시설개선)과 운행적자 발생 시 재정손실금을 자치구가 부담함을 전제로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 <참고자료 2>
- 그 결과, 권한위임에 ‘동의’ 1개 구청, 반대하는 ‘부동의’ 8개 구청, 권한위임에는 찬성하나, 재정부담 등 조건에는 반대하는 ‘조건부 동의’ 9개 구청,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6개 구청과 기타(중복정류소 제한 개선) 1개 구청으로 나타났음.

**< 25개 자치구 의견수렴결과 >**

○ 동의 1, 부동의 8, 조건부 동의 9, 미제출 6, 기타 1

계	동의	부동의	조건부 동의	미제출	기타
25	1	8	9	6	1
	성동	강서, 동작, 은평, 양천, 용산, 관악, 마포, 강북	중랑, 성북, 노원, 서대문, 강남, 구로, 도봉, 강동, 서초		금천

- ※ 동의 : 권한위임에 찬성
- ※ 조건부 동의 : 권한위임 찬성하나, 재정부담 등 전제조건 수용 반대
- ※ 기타 : 중복정류소 제한 규정 개선 필요

전문위원	연락처
주우철	02) 2180-8054

〈참고자료 1〉

□ 사무위임조례 검토의견

(2019. 1. 31. 기준)

연번	안 건 명	소관 부서명	비고
340	<p>안전명 :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○ 주요내용 : 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마련</p> <p>⇒ [부서의견] : 수용불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91.6월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했으나 마을버스 이용 시민 불편(혼란) 발생으로 '00.5월 환수</li> <li>- 교통여건을 고려해 市에서 지하철, 시내버스, 마을버스 입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하나, 권한 위임시 지역 민원 등에 노선이 좌우되어, 운송수단 간·자치구간·업체간 전반적인 조율과 효율적인 체계 유지를 저해할 우려</li> </ul>	버스정책과	김종무 의원발의

##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보고

### 의견수렴 사항

#### ○ 개정안

-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(권한의 위임)의 구청장에게 위임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중 제외되었던 (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)를 자치구로 이관

#### ○ 전제조건

- 마을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(재정보전·인센티브·시설개선)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며
-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운행으로 인한 시내버스 승객수요 감소에 따른 운행적자 발생 시 시 단독으로 노선 폐지·변경·감차와 자치구에서 재정손실금을 부담

### 의견수렴 결과

#### ○ 동의 1, 부동의 8, 조건부 동의 9, 미제출 6, 기타 1

계	동의	부동의	조건부 동의	미제출	기타
25	1	8	9	6	1
	성동	강서, 동작, 은평, 양천, 용산, 관악, 마포, 강북	중랑, 성북, 노원, 서대문, 강남, 구로, 도봉, 강동, 서초		금천

※ 조건부 동의 : 권한위임 찬성하나, 재정부담 등 전제조건 수용 반대

※ 기타 : 중복정류소 제한 규정 개선 필요

## 자치구 의견 내용

자치구	주요의견	해당부서	담당자 (연락처)
성북구	구 재정여건상 보조금(재정보전, 인센티브, 시설개선) 등의 재정부담은 불가함.	교통행정과	심수현 (2241-3409)
강북구	○ 개정내용 및 권한위임 시 전제조건: 반대 -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수단으로 노선조정시 시내버스와 연계하여야 하는 것으로, 교통수단간 환승체계가 시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, 타구협의 및 시내버스 노선의 이해관계 등 대립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권한위임에 대한 개정을 반대하며 - 권한위임 시 전제조건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부담과 업무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	교통행정과	이현주 (901-5917)
도봉구	○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가 이관될 경우 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(재정보전·인센티브, 시설개선)은 자치구에서 부담 - 조건부 찬성(현재 서울시에서 지원 중인 운행결손금은 계속 지원하되, 자치구에서 노선 신설·변경으로 인한 적자 추가 발생분에 대해 자치구에서 부담) ○ 마을버스와 중복운행에 따른 시내버스 승객수요 감소시 자치구 의견조회 절차없이 시 단독으로 노선 폐선·변경·감차 조치 또는 시내버스 승객수요 감소에 따른 운행적자 발생시 자치구에서 재정손실금 부담 - 시내버스의 관리권한(면허 등)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재정손실금 부담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합함	교통행정과	최병연 (4158)
노원구	○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 자치구 위임은 찬성하나 권한위임 시 전제조건인 보조금(재정보전, 인센티브, 시설개선), 재정손실금 등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서는 부담하기가 어려움. ○ 다만 재정부담을 서울특별시 70%, 자치구 30%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수용 가능함.	교통행정과	강인학 (2116-4036)



자치구	주요의견	해당부서	담당자 (연락처)
은평구	<p>- 반대</p> <p>마을버스 노선신설의 유연성 부여 취지에는 동감하지만, 관내 주민들의 노선버스 선호 경향 및 노선버스의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마을버스 특성 상 교통불편 관련 주민요구 해소에 한계가 있음. 노선신설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등 록권한의 위임보다는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의 완화가 필요.</p> <p>아울러 노선 신설 시 재정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(안)을 수용하기 어려움.</p> <p>※ 위임시</p> <p>마을버스 관리업무는 서울시 사무이므로 모든 재정부담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.</p>	교통행정과	(정지훈 351-7757 )
서대문구	<p>○ 마을버스 노선조정 승인권 권한위임에는 동의하나 전제조건이(적자노선 등 보조금 차지구 부담) 에는 부동의</p> <p>○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볼 때 적자노선의 보전을 자치구에서 부담한다면 환경이 열악한 적자노선 주민들의 교통복지 축소가 예상 되므로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주는 등의 대책이 별도로 필요함</p>	교통행정과	권소영 (02-330-1852)
마포구	<p>부동의</p> <p>- 현재 제도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</p>	교통행정과	백선정 (3153-9643)
양천구	<p>○ 마을버스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체제(요금체제 등)를 따르고 있으므로 보조금(재정보전·인센티브·시설개선) 또는 재정손실금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</p>	교통행정과	허현 (2620-3706)

자치구	주요의견	해당부서	담당자 (연락처)
강서구	<p>○ 권한위임 반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 또는 폐지가 예상되며,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 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마을버스 업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</li> <li>-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재정손실금 부담능력이 부족하여 시내버스 승객수요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발생 시 재정손실금을 부담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유지하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노선 폐선·변경·감차 조치하도록 할 수 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관내 시내버스 노선도 대폭 감소 우려</li> <li>-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통해 마을버스, 시내버스 간 연계성 확보 및 중복노선 방지가 중요하나 시 개정안과 같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 단독처리,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자치구 단독 처리로 개정할 경우 교통 환경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됨</li> <li>-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 에 관한사무는 시내버스와의 중복 노선 등 방지를 위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중요한데 자치구에 전적으로 위임할 경우 마을버스 본연의 공익성 저해 우려</li> </ul>	교통행정과	김완주 (2600-4131)

자치구	주요의견	해당부서	담당자 (연락처)
구로구	<p>○ 사무가 이관될 경우 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(재정보전·인센티브·시설개선)은 자치구 부담 관련</p> <p>1.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,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마을버스 관련 업무권한 이관은 필요함</p> <p>2. 그러나 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’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(보조금)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것이므로 그중 마을버스만 분리하여 자치구에서 보조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. 다만, 자치구의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발생 등 일부 부담은 가능함</p> <p>○ 시내버스 승객수요 감소 시 자치구 의견조회 절차 없이 시 단독으로 노선 폐선·변경·감차 조치 또는 자치구에서 재정손실금 부담 관련</p> <p>1. 시내버스 승객수요 감소 시 자치구 의견조회 없이 시 단독으로 노선 폐선·변경·감차 조치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불편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자치구 의견조회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</p> <p>2. 또한 시내버스 승객수요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발생 시 자치구에서 재정손실금을 부담하라는 조건은 자치구에서 승객수요 감소 여부의 확인이 어려우며, 감소 사유가 반드시 마을버스 중복운행에 따른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음</p> <p>3. 마을버스 업무이관 시 시내버스와의 중복정류소 개수에 대한 부분과 증차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, 모든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</p>	교통행정과	(김세곤 860-2475)

자치구	주요의견	해당부서	담당자 (연락처)
금천구	<p>부동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을버스는 자치구별 대중교통 여건, 이용수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운행되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일괄적인 제한 규정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. 예)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4개소 이내 노선 신설 (조례 개정 '12.7)</li> <li>○ 단, 권한 위임의 전제조건 중 보조금 재정부담 및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시내버스 노선 폐선 등의 조치와 재정손실금 부담은 수용할 수 없음.</li> </ul> <p>①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향상 및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, 서울시 보조금의 미 지원 시 교통복지의 질 저하는 물론 자치구 별 교통서비스 격차가 극심해 질 것으로 우려됨.</p> <p>② 마을버스 중복 운행에 따른 시내버스 승객 수요 감소에 대하여 무분별한 노선 증가 방지를 위한 부담은 일부 인정하나, 사안에 따라 교통 환경, 주민 수요 등 종합적인 요인을 판단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 폐선, 변경, 감차 조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.</p>	교통행정과	전금영 (2627-1727)
영등포구	없음.		
동작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선 조정 사무의 위임시 자치구별 지역여건에 따라 노선조정을 할 경우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는 이점이 있으나, 자치구 개별 기준에 처리 시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 및 대중교통 체계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기준에 의함이 합리적임.</li> <li>○ 사무의 위임보다는 노선조정의 운행계통 기준의 완화 및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임.</li> <li>○ 여객자동차법의 광역단체 사무에 대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자치구가 마을버스의 재정지원과 시내버스 재정손실금까지 부담 할 수 없음.</li> <li>○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,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.</li> </ul>	교통행정과	양재호 (820-9875)

자치구	주요의견	해당부서	담당자 (연락처)
관악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을버스 노선 신설·폐지 등 조정 사무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내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, 신설된 노선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</li> <li>○ 시민의 편의 뿐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된 마을버스 노선조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으로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하거나 지엽적 판단으로 처리될 여지가 많아 서울시 체계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확보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.</li> <li>○ 또한,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에 따른 전제조건에 의하면 마을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시내버스 재정손실금 등을 자치구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는 재정확보가 어려워 마을버스 관련 사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민불편도 가중될 것임.</li> <li>○ 따라서, 마을버스 노선 신설·폐지,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이관하는 것은 부적절함.</li> </ul>	교통행정과	김보람 (879-6855)
서초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만 위임되고, 시내버스 정류소와 4개 이상 겹치면 안되는 조례·지침 규정은 존치로 노선 조정이 어려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 위임 시 실질적인 노선 조정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 및 지침 규정 변경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○ 마을버스 지원 보조금이 연간 약24억 원(인센티브 2억포함)으로 자치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</li> <li>○ 추후 발생하는 시내버스 재정손실금까지 포함할 경우 자치구 예산에서 집행이 어려워 현행대로 재정분야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노선조정 권한만 위임</li> </ul>	교통행정과	박정화 (2155~7174)

자치구	주요의견	해당부서	담당자 (연락처)
강남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정내용은 동의함.</li> <li>○ 권한위임시 전제조건인 다음사항은 불합리 하며, 동의하지 않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가 이관될 경우 업체 지원 보조금 자치구에서 부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⇒ 자치구 업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예산 부족.</li> </ul> </li> <li>- 마을버스와 중복운행에 따른 시내버스 승객수요 감소시 자치구 의견조회 절차 없이 市 단독으로 노선 폐선·변경·감차 조치 또는 시내버스 승객수요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발생 시 자치구에서 재정손실금 부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⇒ 기 시내버스 이용객 노선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.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교통행정과	안지형 (3423-6406)
송파구	없음.		
강동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건부 동의</li> <li>-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·폐지, 연장·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 권한 위임은 동의, 권한위임시 전제조건은 부동의</li> </ul>	교통행정과	김정은 (3425-6248)